

[사 건 명] 행심 2015-3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26. 인천광역시 ▲▲구 ▲▲동 1241-1번지(새주소 인천 ▲▲구 ▲▲로 ○○)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중 지상 6층 일부(면적 233.98㎡, 이하 ‘이 사건 신청 장소’ 라 한다)에 당구장 시설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장소가 ●●초등학교(2007. 9. 1. 개교)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67M, ●●초등학교(1972. 3. 2. 개교)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29M, ◎◎초등학교(개교일자 2008. 3. 1.)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98M, ●●중학교(2008. 3. 1. 개교)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35M에 이르는 등 4개 학교의 중복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다. 2015. 9. 8. 2015년도 제11차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참석위원 9명 전원일치로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지”로 심의의결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근거로 “금지” 결정된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5. 9. 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5. 9. 17.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오늘날의 당구는 스포츠 종목으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국가 대표가 출전 중이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도 채택종목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 1967년 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가 4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으나 현실은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클럽 자율 활동 당구 반을 운영하고 있는 등 당구장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으며, 이 사건 신청 장소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당구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1991.07.12. 90누 8350)에서도 당구장이 체육시설이기는 하나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이용자의 체력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한편 오락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정화구역 내 설치 제한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97.03.27. 94헌마 196·225, 97헌마83(병합))에서도 당구의 오락성으로 인하여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이 당구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고 현실적으로 음주, 흡연, 도박경기 등의 불건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학생을 차단, 보호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 나. 당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이러한 사회·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구장의 영업형태를 보면 24시간 영업과 당구 내 음주 행위, 취객들의 당구 행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흡연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구장을 이용한 사행성 게임기 운영 등 학생들을 위해 영업 준수 사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유해업소 영업은 학생들에게 비행이나 탈선행위 등을 조장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 다. 2008년 동일건물(인천 ▲▲구 ▲▲동 1241-1번지) 4층 201㎡에서 동일업종인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민원인이 신청한 해제 심의 신청에서 피청구인은 2008. 7. 17. 초·중학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이유로 금지처분 한 바 있고, 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결과 기각과 각하되었다.

라. ●●초, ◎◎초, ●●초, ●●중 등 4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신청지 주변은 유아·초·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어 방과 후 학생들이 생활 근거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초, ●●초, ●●중학교 개교이후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유해업소는 없는 상태이고 당구장 업종은 모두 금지된 이력이 있다.

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적인 제도로써 학생들에게 정온하고 쾌적한 학교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학교교육의 능률을 기하려는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보건법 제5조와 제6조제1항
- 나.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7조
- 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5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본 건과 동일 건물에 대하여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한 해제 심의신청이 거부되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 2) 신청지 주변에는 ●●초, ◎◎초, ●●초, ●●중 등 4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빈번한 학생들의 이동이 있고, 이사건 건물에도

학원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다.

- 3) 당구가 생활체육 권장 스포츠이기는 하나, 당구장에서는 여전히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2013년 교육부 유해인식도 조사에서는 당구장이 학교주변에 생기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 학부모, 학생 11,029명 중 65.3%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을 절대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를 상대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서는 상대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장 소속 하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신청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다.
- 2) 이에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정화구역 내 주변 환경여건, 학생들의 접근성, 해당학교 정화구역 내 심의 내역, 업종에 대한 사회적 반응, 업종별 특성, 학교장 의견, 통학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지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보호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 할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한 것으로 마땅히 규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